

직제규정

(제정 1986. 1. 28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, 학교법인신동아학원의 정관 및 학칙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정원) 직원의 정원은 정관 [별표 제2호]와 같다.

제4조(사무분장)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사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.

제2장 총장

제5조(총장) ① 총장은 본교를 대표하고, 교무를 총괄하며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.

② 총장은 법인정관 및 직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의 임면과 보직을 제청한다.

제6조(부총장) ① 본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.

② 부총장은 교수 또는 2급 직원으로 보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,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비서실) 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, 실에는 실장과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비서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부총장의 보좌업무는 비서실에서 관장한다. 다만, 부총장이 다른 보직을 겸직하였을 경우에는 겸임부서의 선임 행정실에서 보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.

제3장 보직 및 임기

제8조(보직 및 임기) ① 부총장, 본부장, 처장, 학장, 대학원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17.9.1.>

② 삭 제 <2015.3.1.>

③ 부속기관장 및 부설기관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17.9.1.>

제4장 대학본부

제9조(조직) ① 대학본부에 교육혁신본부와 각 처(선교봉사처, 교무처, 학생취업처, 입학처, 기획처, 총무처)를 둔다.

<개정 2011.12.28., 2012.5.18., 2014.1.1., 2015.11.1., 2017.9.1.>

② 교육혁신본부와 각 처에 실 또는 팀을 두며,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5.11.1., 2017.9.1.>

제10조(보직) ① 교육혁신본부장과 각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. 다만, 기획처장과 총무처장은 2급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7.9.1.>

② 교육혁신본부에 부분부장을,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,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7.9.1.>

③ 부설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④ 실장 및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[본조개정 2015.11.1.]

제11조 삭 제 <2015.11.1.>

제12조(교육혁신본부) 교육혁신본부에 교육혁신지원팀, 교육과정평가센터, 비교과교육지원센터, 교수학습개발센터, 융합교육지원센터, 특성화사업추진센터를 둔다. <개정 2017.12.1.>

[본조신설 2017.9.1.]

제13조(선교봉사처) 선교봉사처에 선교지원실, 학생생활관, 대학교회, 사회봉사센터, e-복지관을 둔다. <개정 2014.1.1., 2015.11.1., 2017.9.1., 2018.10.1.>

제14조(교무처) 교무처에 교무지원실, 학사지원실, 학생서비스센터를 둔다.

<개정 2015.11.1., 2016.12.1., 2017.9.1.>

제15조(학생취업처) 학생취업처에 학생지원실, 취업지원실, 인권센터, 대학일자리센터, 진로개발지원센터, 카운슬링센터,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, 장애학생지원센터, 신문방송국을 둔다. <개정 2011.12.28., 2012.5.18., 2015.11.1., 2017.8.1., 2017.11.1., 2018.6.1.>

제16조(입학처) 입학처에 입학지원실, 입학사정팀을 둔다. <개정 2014.1.1.>

제17조(기획처) 기획처에 기획예산실, 대외협력홍보실, 빅데이터센터를 둔다. <개정 2010.12.28. 2014.1.1., 2018.10.1.>

제18조(총무처) 총무처에 총무지원실, 재무지원실, 시설지원실을 둔다. <개정 2014.1.1.>

제5장 대학, 대학원

제19조(조직) ① 대학 및 대학원 조직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를 두어 교원을 소속시킬 수 있으며,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- ② 각 대학 및 대학원에 행정지원실을 두며,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 다만, 행정지원실은 통합하여 둘 수 있다.
- ③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, 탄소인력양성사업단을 둔다.
- ④ 문화융합대학에 스타워트니스센터를 둔다. <개정 2016.1.1., 2016.3.1.>
- ⑤ 사범대학에 교육연수원, 교직지원부를 둔다.
- ⑥ 사회과학대학에 민간경비교육센터를 둔다. <신설 2016.1.1.>

[본조개정 2015.11.1.]

제20조(보직) ① 학장 및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.

- ② 부설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- ③ 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[본조개정 2015.11.1.]

제21조 삭제 <2015.11.1.>

제6장 부속기관

제22조(조직) ① 부속기관으로 국제교류원, 평생교육원, 정보통신원, 농생명융합기술원, 도서관, 박물관, 체육부, 학생군사교육단, 직장예비군연대를 둔다. <개정 2016.1.1.>

- ② 부속기관에 실 또는 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- ③ 국제교류원에 국제교류지원실, 국제교류센터, 한국어교육센터, 국제영재아카데미를 둔다.
- ④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지원실, 글로벌문화교육센터를 둔다.
- ⑤ 정보통신원에 정보통신지원실을 둔다.
- ⑥ 농생명융합기술원에 농생명사업지원실,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,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, 농생명과학기술센터를 둔다. <개정 2016.1.1.>
- ⑦ 도서관에 학술정보운영실을 둔다. <개정 2016.1.1.>
- ⑧ 박물관에 호남기독교박물관을 둔다. <개정 2016.1.1.>

[본조개정 2015.11.1.]

제23조(보직) ① 부속기관장 및 부설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- ② 실장 및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[본조개정 2015.11.1.]

제24조(세부사항)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4.2.21., 2015.11.1.>

제7장 산학협력단

제25조(조직) ①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실, 산학연구운영실, 산학협력지원실을 둔다. <개정 2018.3.1.>

② 산학협력단에 부설기관, 부설연구소 및 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등으로 정한다.

[본조개정 2015.11.1.]

제25조의2(보직) ①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3급 이상의 직원 또는 외인사로 보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③ 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8.3.1.>

[본조신설 2015.11.1.]

제8장 창업지원단

제26조(조직) ① 창업지원단에 행정지원실을 둔다.

② 창업지원단에 부설기관, 부설연구소 및 센터를 둘 수 있으며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지원단 규정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3.10.] [본조개정 2015.11.1.]

제26조의2(보직) ① 창업지원단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3급 이상의 직원 또는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다.

② 창업지원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③ 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[본조신설 2015.11.1.]

제9장 LINC+사업단

제27조(조직) ① LINC+사업단에 LINC+사업팀을 둔다.

② LINC+사업단에 부설기관, 부설연구소 및 센터를 둘 수 있으며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LINC+사업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2.21.] [본조개정 2015.11.1., 2017.7.1.]

제27조의2(보직) ① LINC+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.

② LINC+사업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③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[본조신설 2015.11.1.] [본조개정 2017.7.1.]

제10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

제28조(조직) 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팀을 둔다.

②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부설기관, 부설연구소 및 센터를 둘 수 있으며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28조의2(보직) 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.

②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③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[본장신설 2018.10.1.]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3-1-1-6 직제규정

이 규정은 199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부 칙

3-1-1-8 직제규정

이 규정은 201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재직중인 부처장에 대한 경과조치) 2011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부처장은 2011년 2월 28일자로 부처장 보직이 면직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직제조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는 타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